

의안번호	2212984
의 퇴 인	정준호 의원
회 답 일	2025. 11. 7.
추 계 번호	25E5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수도권 밖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수도권 외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32억원, 2040년 28억원 등 향후 14년간 총 1,935억원(연평균 1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5년 연장(안 제18조의3)	-18.4	-38.0	-58.9	-81.0	-104.6	-108.0	-111.4	-115.0
수도권 외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63조의4)	-13.8	-42.7	-73.5	-106.2	-140.9	-129.3	-142.7	-98.2
계	-32	-81	-132	-187	-246	-237	-254	-213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누적	연평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5년 연장(안 제18조의3)	-118.7	-122.5	-101.1	-78.2	-53.8	-27.7	-1,137	-81
수도권 외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63조의4)	-50.7	-	-	-	-	-	-798	-89
계	-169	-122	-101	-78	-54	-28	-1,935	-138

주: 1. 각 항목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존재하는 연도를 대상으로 계산한 수치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 및 과학기술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실제 감면대상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임금에 따라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자 중 비수도권 취업 연구자 등 소득세 감면을 상향 조정 및 적용기한 5년 연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율: (현행) 50% (개정안) 50% (비수도권 소재 연구기관 등 취업자 70%)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2	안 제63조의4 (수도권 외의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비수도권 소재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 (감면율) 5년간 50% 세액감면 (한도: 연 500만원) - (적용기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비수도권 소재 연구기관 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안은, 동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63조의4 (수도권 외의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 국내 복귀자 및 비수도권 연구기관 취업자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10년간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세수효과는 2027~2040년 발생
 - 비수도권 연구기관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5년 발생
- 내국인의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5년 조세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하되, 누적된 실적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누적액으로, 해당 실적액을 연단위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이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연도별로 배분하여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를 산출

	감면액 발생 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2024년 복귀자					

- 개정안은 국내 복귀자 중 비수도권 소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인원의 수와 소득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동 추계에서는 제외

□ 수도권 밖의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 하에 추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 1)상 지역별 연구자 통계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 신규 취업자 수를 추정
 - － 「연구개발활동조사」 상 '20~'23년 비수도권의 연구자 수 증가는 연평균 2,987명으로, 향후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의 신규 취업자 수가 해당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가정
-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의 신규 취업자의 평균임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19개)²⁾의 2024년 신입사원 초임 평균연봉을 토대로 추정하되,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

1) 조사대상 분야는 OECD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에 따른 이학, 공학, 의약보건의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이며, 2024년 조사대상(회수 기준) 기관은 68,096개(공공연구기관 918개, 대학 350개, 의료기관 410개, 기업 66,418개), 집계된 연구원 수는 총 60만 3,566명

2) (19개 대상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2024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입사원 초임 평균연봉³⁾: 4,599만원
-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4~2035년 명목임금 상승률⁴⁾: 3.2 ~ 3.3%
-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 취업자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신규 취업자 평균임금에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 및 감면율(50%)을 적용하여 계산
 - 「국세통계연보」⁵⁾상 총급여구간별 평균 실효세율(2023년 소득기준):
4천만원~4.5천만 이하 2.0%, 4.5천만~5천만 이하 2.7%, 5천만~6천만 이하 3.6%, 6천만~8천만 이하 5.2%
 - 2023년 기준 총급여구간별 평균 실효세율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앞서 추정한 신규 취업자 수와 1인당 평균 감면액을 고려하여 전체 세수효과를 추계
- 해당 추계는 감면 신설에 따른 지역별 연구기관 취업자 수 등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후 비수도권 연구기관 취업자 수가 변동할 경우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국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의 50%를 10년간 감면함
 - 대상자: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국내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⁶⁾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자

3) 각 연구기관의 급여표 상 1호봉(무경력자)를 기준

4) 국회예산정책처(2025.9),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및 내부자료

5)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2024. 12.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 감면내용: 취업일부터 10년* 동안 소득세 50% 세액감면
* 2022년 개정을 통해 감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기존 복귀자에게도 적용)
- 현행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자

□ (감면실적) 동 특례는 2020년 국내복귀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후,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p
감면실적	신설	0	17	11	15	24	92

주: p는 잠정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추계방법) 2025년 감면실적(잠정치)을 연단위로 환산 후, 연단위 환산액이 향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세수효과 추정
- 각 연도별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감면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이를 연단위로 환산

[표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연단위 환산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잠정치)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A)	17	11	15	25	92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2024년 복귀자					
연단위 환산액 (A/누적연도□□)	17	5.5	5	6.25	18.4

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 2025년 연단위 환산액의 평균(18.4억원)이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산출

[표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 발생

	2027	2028	2029	...	2036	2037	2038	2039	2040
2026년 복귀자	18.4	19.0	19.6	...	24.5				
2027년 복귀자		19.0	19.6		24.5	25.3			
2028년 복귀자			19.6		24.5	25.3	26.1		
2029년 복귀자					24.5	25.3	26.1	26.9	
2030년 복귀자					24.5	25.3	26.1	26.9	27.7

(3) 추계결과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8.4억원, 2040년 27.7억원 등 14년간 총 1,137억원(연평균 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8조의3)	-18.4	-38.0	-58.9	-81.0	-104.6	-108.0	-111.4	-115.0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누적	연평균
	-118.7	-122.5	-101.1	-78.2	-53.8	-27.7	-1,137	-81

나.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1) 추계방법

□ (신규 취업자 수)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토대로 매년 2,987명의 비수도권 연구기관 신규 취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상 2020~2023년 지역별 연구자 수 증감은 다음과 같음
- 비수도권 연구원 수 증감의 2020~2023년 평균은 2,987명으로 해당 수치가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

[표 6] 지역별 연구원 수 증감: 2020~2023년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3년 연평균
전국		19,909	28,621	14,864	2,036	16,358
수도권	서울	6,514	11,850	4,908	2,437	6,427
	인천	232	1,233	-358	-613	124
	경기	9,927	9,217	8,496	-359	6,820
	수도권 소계	16,673	22,300	13,046	1,465	13,371
비수도권	부산	798	81	350	-544	171
	대구	451	358	-401	-2	102
	광주	496	-575	-475	27	-132
	대전	-1,666	2,318	408	1,607	667
	울산	-125	48	213	201	84
	세종	542	238	49	331	290
	강원	184	670	-897	-143	-47
	충북	819	1,137	1,065	-858	541
	충남	200	834	-317	1,287	501
	전북	825	650	534	-275	434
	전남	237	286	551	-142	233
	경북	-346	702	664	-283	184
	경남	589	-508	-48	-530	-124
	제주	232	82	122	-105	83
비수도권 소계		3,236	6,321	1,818	571	2,987

주: 1. OECD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에 따른 이학, 공학, 의약보건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함

2. 매년 발표되는 지역별 연구원 수를 토대로 단순 증감을 계산한 수치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신규 취업자 임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입사원 평균 임금을 토대로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 취업자의 임금을 추정

- 2024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입사원 초봉은 3,775만원 ~ 5,558만원 수준으로, 19개 연구기관의 평균액은 4,599만원⁷⁾
- 2024년 4,599만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향후 취업자의 임금이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연도별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전망함

[표 7]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의 취업자 평균임금(전망치)

(단위: 만원)

	2026	2027	2028	...	2033	2034	2035
평균임금 (전망치)	4,900	5,060	5,226	...	6,129	6,325	6,5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인당 감면액) 앞서 추정한 신규 취업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및 감면율(50%)을 적용하여 1인당 감면액을 추정

[표 8]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 신규 취업자의 1인당 감면액(추정치)

(단위: 만원)

	2026	2027	2028	...	2033	2034	2035
평균임금(A)	4,900	5,060	5,226	...	6,129	6,325	6,528
실효세율(B)	2.7%	3.6%	3.6%	...	5.2%	5.2%	5.2%
소득세 추정치 (C = A × B)	132	185	191	...	319	329	339
감면액 (D = C × 50%)	66	92	95	...	159	164	1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전체 감면액) 신규 취업자 수와 1인당 감면액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액을 추정

- 개정안은 2030년 취업자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며 취업 후 5년 동안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고려한 감면액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음

7) NST포털시스템(<https://onest.re.kr/>)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함

[표 9] 소득세 감면액 발생시점

감면액 발생 취업시점	'27	'28	'29	'30	'31	'32	'33	'34	'35
2026									
2027									
2028									
2029									
2030									

(2) 추계결과

- 비수도권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13.8억원, 2035년 98.2억원 등 향후 9년간 총 798억원(연평균 8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수도권 외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안 제63조의4)	-13.8	-42.7	-73.5	-106.2	-140.9	-129.3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수도권 외 연구기관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안 제63조의4)	-142.7	-98.2	-50.7	-798	-89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 및 과학기술분야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실제 감면대상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임금에 따라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